할부금융 설명서

Ver. 2024.10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계약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아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할부금융은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대출 약정 체결(2자 거래)로 이루어지는 오토론과는 달리, 소비자-금융사-물품판매자 간의 3자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물품판매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할부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성' 확인)
· 일반적인 대출(신용대출, 오토론 등)과 달리 할부금융은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제약*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수수료 등 비용부담', '10. 해지에 관한 사항', '13. 청약의 철회(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확인)

*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불가능(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가목)하며, 할부거래법 상 철회권과 항변권은 별도 적용

▶ 민원 · 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할부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할부금융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최대 2%의 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수수료 등 비용부담', '10. 해지에 관한 사항' 확인)

* 예) 1억원을 중도상환(적용요율을 2%로 가정)할 경우, 고객은 최대 2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함

Q2. 할부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금액에는 원리금,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금액의 합계는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대출 실행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 수수료 등 비용부담' 확인)

Q3. 할부금융상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 고객은 약정한 대출 상환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고객은 모든 할부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되고, 연체이자 부담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 대출기한 전 채무 상환이 필요한 경우' 확인)

▶ 할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Q1.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할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셔야 하며, 신용점수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11. 연체정보 등의 등록' 확인)

(예시) 상환해야 하는 할부금이 5천만원인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50만원(지연배상금율 3% 적용)이 발생함을 유의

▶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Q1.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card.co.kr) 및 고객센터(1800-1221)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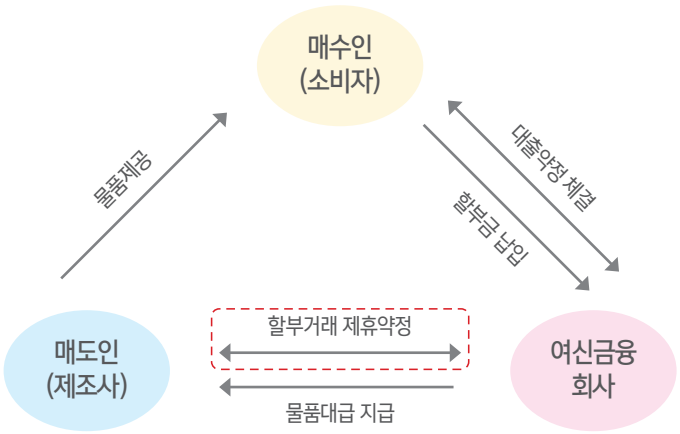
1. 상품 개요 및 특성

상 품 명	오토할부		대 상	신차 구매고객
적용금리	~ 8.5% 이내		할부금	최대 1억원
금리적용방식	☐ 변동 ☑ 고정 ☐ 혼합		할부기간	취급 후 최대 72개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및 요율	☑ 대상 ☐ 비대상	최대 2%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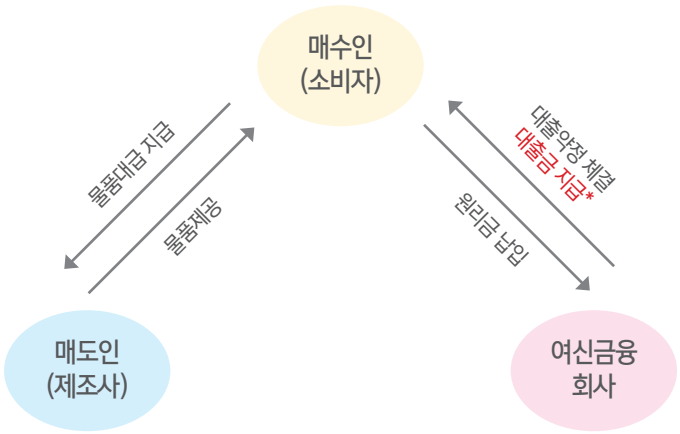
· 본 할부금융상품은 자동차를 구매하고자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상품입니다. 할부금과 금리 등은 내부 심사에 거쳐 결정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심사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자세한 설명은 '5. 할부금 납입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부금융과 오토론의 비교

자동차할부금융 상품 거래절차



오토론 상품 거래절차



* 고객 동의 또는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매도인에게 직접 자금 지급

2. 금리의 변동 및 산출근거

· 금리의 변동 유무

– **고정금리** : 대출성상품이 실행될 때 결정된 금리가 한 번 결정되면, '약정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금리의 산출 및 변동근거

– 고객에게 실제 적용되는 **약정금리**는 **①원가요소와 ②마진(목표이익률), ③조정금리**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 **원가요소**(①)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되며,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원가들을 산정합니다.

· **기준금리**(①+②)는 이러한 원가요소(①)에 목표이익율(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금리**(③)는 프로모션 등에 따른 추가 혜택 등으로 인해 가산되는 금리로, 기준금리에 더해져 실제 약정금리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대출금리(약정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상단의 체크박스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하나카드

4. 수수료 등 비용부담

※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금액에는 할부금융 대출금액 및 이자액,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금액의 합계는 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대출 실행 후 보내드리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할부금융상품은 3년을 초과하여 상환 시에도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약정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1년 이상 대출] 중도상환원금×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1%)×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만기 1년 미만 대출]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용**

- 자동차 등에 근저당 설정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으로, **설정 시에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며, **해지 시에는 고객(채무자)이 부담**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 :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최저 15,000원), 증지대:설정금액의 0.4%]**
 ☞ 말소(감액)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대출 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부담)에 의거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할부금 납입방법

· **할부금의 납입**

- 고객님께서는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할부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약정 시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관련 정보 제공 시, 할부금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 자동이체로 할부금 납입 시,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하실 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할부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지정한 납입일의 오전 9시 이전 청구되며, 업무시간 내에 출금되므로 그 시간 내에 할부금 잔액이 있어야 함)
 -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자동으로 납부가 이월되며,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 당월 청구금액 선납은 고객센터(1800-1221)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청구금액을 제외한 부분 중도상환이나, 전액 중도상환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및 고객센터(1800-1221)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 인터넷홈페이지/모바일앱 : 06시 ~ 23시 30분(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고객센터 : 평일 09시 ~ 18시(비영업일 제외)
- 자동이체 계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계좌가 하나은행↔하나은행 변경 외 타행인 경우 모두 결제일 기준 전영업일부터 익영업일까지 결제계좌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첫 납부금은 결제일에 따라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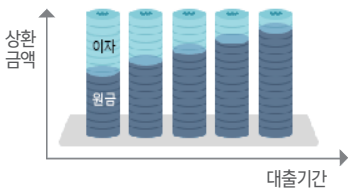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고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예시) 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10%, 대출기간 24개월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거치기간 종료 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1,074,560원	1회 ~ 24회 461,440원 (원리금)

· **주요 상환방법에 따른 특성 비교**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특징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카드

6.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법정최고금리인 20% 이내로 적용됩니다.(연체가산이율은 연 3%) 다만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단, 원금 5천만원 미만인 개인 채무자가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대출원금이 아닌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예시) 원금 1억2천만원(월 1백만원 분할상환),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 연 3%인 할부금융의 분할상환금(1백만원) 및 이자(50만원)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 발생 후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연체기간(예)	연체이자 계산 방법	연체이자
연체발생 ~ 30일분	지체된 분할상환금(1백만원) × 연 8%(5% + 3%) × 30/365	6,575원
연체 31일 ~ 60일분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원금(1억2천만원) × 연 8%(5% + 3%) × 30/365	789,041원
계		795,616원

[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상거래의 경우, 아래 예시에 따라 연체이자 부과]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 원금 90인 경우,
[10 ×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 [90 × 약정이자] 부과

* 분할상환금 및 기한이익상실 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만을 1개월을 30일로 보고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조건, 이자일수계산,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채무자는 전체 대출잔액이 아닌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7. 대출기한 전 채무 상환이 필요한 경우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금융회사와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 **<u>채무자인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 담보재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u>**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즉시 상실하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 합니다.

· **<u>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여신거래기본 약관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사유)</u>**
- 금융회사의 서면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일정 시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모든 대출금 (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예시) 주요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이자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체한 경우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하나카드

8. 담보권 설정 및 권리변동

※ 담보권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사항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 내 근저당권설정비용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9. 개인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개인차주와 관련된 설명)

-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 신용공여,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등입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해지에 관한 사항

- **할부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상품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초과하여 상환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화를 인도받고,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없을 경우
 -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지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안내하고 가상계좌를 발송합니다.(납부 시 해지 처리 진행)
 - 대출금 중도상환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및 고객센터(1800-1221)통해 처리 가능하며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홈페이지/모바일앱은 하나은행 자동이체 계좌만 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 06시 ~ 23시 30분(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고객센터 : 평일 09시 ~ 18시 (비영업일 제외)
 -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등기설정/말소비용, 감정 수수료, 인지세 등)을 고객이 부담해야합니다.

11. 연체정보 등의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 10만원 이상' 「단기연체」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신용정보들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집중, 활용됩니다.
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② '연체정보 등' 정보(연체사실 등), ③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현황 등)

※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12.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세지 등을 말함)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하나카드

13. 청약의 철회(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제가목에 의거하여, 할부금융상품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다만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만 할부금융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약철회권과 같은 법 제16조의 항변권을 적용받으며, 주요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할부거래법 상 청약철회권이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거래법 상 항변권이란 **"할부계약기간 중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의 거래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한 거래
-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
 *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보험,증권 및 어음, 부동산 등

※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설치에 전문이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14. 자료열람요구권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5. 개인신용평가대응권(개인차주와 관련된 설명)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hanacard.co.kr>고객센터>서류간편발급서비스>개인신용평가결과서)에서 직접 조회 후 결과 내용을 이메일 또는 FAX로 발송 요청 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고객센터(1800-1111) 상담원에게 동일 내용을 이메일 또는 FAX로 발송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16. 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주의사항**

- 자금용도 외 유용이란 대출 계약 시 기재하신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유용 해당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 동 할부금융 상품은 계약 만기시점에 연장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 **자동차의 제3자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제한 안내**

- 소비자는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당사의 승낙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는 등 **임의처분**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제6조)

하나카드

17. 자동차 할부금융 관련 사기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이 **고수익** 또는 **취업**을 약속하면서 **자동차**를 **편취**하거나, 현금을 융통해 준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자동차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렌터카 사업에 쓸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추가 수익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만 받고 잠적

[사례 2] 중고차 수출업자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해 해당 차량을 비싸게 수출하여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중고차 수출업자가 자동차만 받고 잠적

[사례 3] 지인인 중고차 딜러가 실적이 부족하다며 중고차 대출을 받아 구매해주면 3개월 안에 재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지인은 자동차를 편취하고 잠적

[사례 4]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계약하여 대출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융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자동차만 비싸게 구매하고 현금은 못 받음

상기와 같은 목적 또는 이유로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자동차는 받지 못하고, 대출원리금만 떠안는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

· 본 상품을 연체하셨을 때에는 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해야 하는 할부금이 2천만원인 경우, 약정이자율에 지연배상금율 3%를 추가하여 약정이자를 제외한 최대 월 연체이자 5만원(60만원/년)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본 상품은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최대 2%의 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중도상환하시는 경우(중도상환수수료율 2%로 가정), 최대 200 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대출상품 해지가 가능함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 본 상품은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권 대상*이 아니지만 할부거래법상의 철회권과 항변권은 적용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불가능(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현금을 융통해 준다고 약속을 받고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시는 경우 자동차는 받지 못하고, 할부금융 원리금만 떠안는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확인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해당여부	
	본인은 하나카드와 할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과 상담하여 본 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20 년 월 일 (서명/인)

하나카드